

『인도,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칙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3. 11.

통보문서 번호	미통보	규제분야	에너지/전지
통보국	인도	HS Code	8506, 8507
작성기관	TBT종합지원센터	작성자 문의처	엄기현 02-3487-6148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규제 제개정 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9
붙임1. 부속서 개정(규제원문)	10

1

규제 개요

□ 발표 내용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칙, 2022를 '23.10.25.에 개정함¹⁾

규칙	내용
규칙 4	▪ 생산자가 폐배터리를 관리하고 등록받도록 규정함
규칙 8	▪ 배터리 재생과 관련된 기업은 폐배터리 중량을 보고해야 함
규칙 9	▪ 재활용업체가 등록된 업체와만 협력하도록 요구함
규칙 10	▪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에 대해 설명하고 거래 플랫폼을 소개함
규칙 11	▪ 등록 절차와 정보 공유를 간소화함
규칙 14	▪ 신고서 제출 일정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함
규칙 15	▪ 위원회 회의 및 보고를 의무화함
부속서 1과 2	▪ 구체적인 규정 준수 목표와 요구사항을 제공함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정, S.O. 3984(E), 2022 - 개정 - (생산자 책임 확대, 수거, 재활용 및 리퍼비시 목표 등에 관한) 규정, S.O. 4669(E), 2023 ▪ Battery Waste Management Rules, S.O. 3984(E), 2022 - Amendment - (o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collection, recycling and refurbishment targets, etc) Rules, S.O. 4669(E), 2023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 Indian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링, 재활용, 등록, 신고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최종안
WTO TBT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통보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월 25일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월 25일
준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3월 31일

1) 관보 URL

<https://egazette.gov.in/WriteReadData/2023/249699.pdf>

□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Batteries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06, 8507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4,640 (2022년 기준)

2

규제 개정 내용

□ 규제 개정 내용

○ (규칙 4) 생산자의 기능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는 재활용 또는 재정비 의무가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한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는 부속서 2에 따라 재활용 또는 리퍼비싱* 의무에 따라 시장에 출시하는 건전지와 자체 사용하는 건전지에 대해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져야 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는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에 대해 부속서 2에 명시된 수거 및 재활용 및/또는 재정비 목표량을 충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는 건전지 또는 전지 팩 제조, 조립 또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전 폐전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생산자는 전년 회계연도에 생산된 사용 전 폐전지에 대해 서식 3에 따라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추가) 생산자는 자체 사용 건전지를 포함하여 시장에 출시된 건전지 또는 전지 팩에 대해 부속서 2에 언급한 수거, 재활용 및 리퍼비싱 목표를 충족해야 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제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서식 1(A)를 사용하여 중앙 집중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생산자로 등록하고, 등록 증명서는 서식 1(B)로 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는 서식 1(A)의 온라인 중앙 포털을 통해 중앙오염관리위원회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로부터 등록받아야 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는 만료 60일 전에 서식 1(A)를 사용하여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 등록에 관한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취소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한 서식 1(B)의 등록 증명서를 해당 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에 포함된 정보의 변경 사항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 등록에 언급된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는 생산자 책임 확대 등록에 포함된 정보 변경 사항을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게 알려야 함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시장 출시와 관련된 영구적인 중단에 대해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생산자가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생산자는 이 규칙 조항에 따라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미 시장에 출시된 건전지와 관련하여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해제해야 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는 직전 회계연도에 제조된 배터리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서식 1(C)로 작성된 생산자책임재활용 계획을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생산자는 중앙집중식 포털을 통해 배터리 수량 및 중량에 대한 정보를 배터리 재료의 건조중량과 함께 포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생산자는 지난 회계연도에 제조, 조립 또는 수입된 건전지와 관련하여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서식 1(C)에 따라 중앙오염 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는 본 규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FY(회계연도) 2022년~2023년에 제조된 배터리에 대해 서식 1(C)로 작성된 생산자책임재활용 계획을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생산자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라 건전지 또는 전지 팩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도록 하는 조치 해야 함

* 초기 불량품이나 환불된 개봉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다시 내놓는 것

○ (규칙 8) 재정비업자의 기능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배터리 재정비에 종사하는 법인이 처리한 폐배터리 총량은 중앙오염관리 위원회에서 개발한 중앙집중식 포털 및 법인 웹사이트에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분기별로 폐전지 리퍼비싱과 관련된 기관에서 가공 처리한 폐전지의 총중량은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생성을 위해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개발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규칙 9) 재활용업자의 기능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배터리 재활용에 종사하는 법인이 처리한 폐배터리 총량은 중앙오염관리 위원회에서 개발한 포털 및 법인 웹사이트에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분기별로 폐전지 재활용과 관련된 기관에서 가공 처리한 폐전지의 총중량은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개발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법인과 거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재활용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른 기업과 거래해서는 안 됨

○ (규칙 10) 폐배터리 인증서 제공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재활용 또는 재정비한 폐배터리 양은 법인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이 인증서는 폐배터리 범주별로 적용되며, 법인의 상품서비스 데이터에 포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재활용 또는 재정비한 폐배터리 양은 법인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이 인증서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관련 매개 변수에 근거하여 폐배터리 범주별로 적용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된 법인이 제공한 폐배터리 인증서는 재정비 또는 재활용된 배터리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해 제공해야 하며,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할 수 있음.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포털에서 이러한 인증서 발행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등록된 법인이 제공한 폐배터리 인증서는 재정비 또는 재활용된 배터리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해 제공해야 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할 수 있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회수율 목표는 배터리 건조중량 중 회수된 모든 재료의 총중량 백분율이며, 재활용업자는 아래의 표에 명시된 배터리 재료의 최소 회수율을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 목표는 규정 15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4년마다 기술 및 과학의 진보와 폐기물 관리 분야의 신기술에 비추어 회수된 배터리 재료의 최소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환경산림기후변화부에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는 중앙오염 관리위원회가 재활용 또는 재정비 수량에 기초하여 중앙집중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발행하며, 재활용업자 또는 재정비업자에게 할당함. 재활용업자 또는 재정비업자는 폐 배터리와 교환하여 할당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를 생산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재활용 또는 재정비 수량에 기초하여 중앙집중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발행하며, 재활용업자 또는 재정비업자에게 할당함. 재활용업자 또는 재정비업자는 생산자 책임확대의무 이행을 위해 할당된 생산자 책임재활용 인증서를 생산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업자 및 재정비업자를 위한 생산자 책임재활용 인증서는 처리된 배터리 종량, 특정 연도의 재료 회수 목표 이행률 및 배터리의 지리적 출처(예: 국내산 또는 수입산)를 기준으로 생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재활용업자 또는 리퍼비싱업자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는 경우에 따라 가공 처리되거나, 리퍼비싱된 폐전지의 종량과 중앙오염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생산된 건전지 재료의 종량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가공 처리되거나 리퍼비싱된 폐전지를 기준으로 모든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해야 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공식은 재활용업자를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인증서를 추정하는 데 사용됨 <p style="text-align: center;">[공식]</p> <p>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kg) = [배터리 재료의 실제 회수율(%) / 배터리 유형 및 연도별 회수 목표(%)] x 처리된 배터리 수량(kg) x (1-A)</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국내에서 발생한 폐배터리의 경우 A=0, 2016년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 간 이동) 규정에 따라 수입을 통해 공급된 폐배터리의 경우 A=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2016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 간 이동) 규칙에 따라 수입된 폐전지 재활용 또는 리퍼비싱에 대해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입된 폐전지 재활용 또는 리퍼비싱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해야 함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범주의 잉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는 동일한 배터리 범주의 상계, 이월 및 판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 (i) 재활용에 따른 잉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는 재활용에 사용할 수 있음. 재정비에 따른 잉여 인증서는 재활용에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한 카테고리의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는 같은 카테고리의 건전지에 대한 상계, 이월 및 판매에만 적용할 수 있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판매 및 구입을 위한 하나 이상의 거래 플랫폼은 중앙 정부의 승인받아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라 공인 기관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음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의무가 있는 기업 간의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거래를 위해 하위 규칙 15에 따라 구축된 전자 플랫폼 운영 및 규정은 이를 위해 중앙오염관리위원회의 권장 사항에 따라 중앙 정부가 고지한 지침에 따라야 함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시행 중인 환경 보상 체제와 폐전자 수거 및 친환경적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최고 및 최저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가격을 정해야 함

○ (규칙 11) 중앙오염관리위원회의 기능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등록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함. 2주의 기간이 만료된 후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거부하지 않는 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등록은 5년 동안 유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생산자 등록은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까지 유효함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생산자의 생산자 책임재활용 계획 및 생산자의 등록 세부 사항을 주오염관리위원회와 공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생산자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국가오염관리위원회와 공유해야 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서식 1(A) 제출 시 등록을 갱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정지 및/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등록 또는 갱신이 이루어지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발행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폐배터리의 수거, 보관, 운송, 재정비 및 재활용에 대한 친환경 절차 지침을 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친환경적 폐전지 수집, 보관, 운송, 리퍼비싱 및 재활용 절차와 이러한 다양한 규칙 조항 이행에 대한 지침을 공표해야 함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생산자의 생산자 책임재활용 계획 및 연차보고서를 공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특히 생산자의 생산자 책임 확대 목표, 폐전지 재활용 및 리퍼비싱,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발급 및 교환, 환경 보상 수집 및 활용을 포함하는 정보가 기재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 정부에 제공함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특히 배터리 재료 회수에 관한 규정 10의 하위규정 (4)와 관련하여 기술 경제적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위해 폐배터리 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검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중양오염관리위원회는 특히 배터리 재료 회수와 관련하여 기술 경제적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위해 폐배터리 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검토해야 함

○ (규칙 14) 중양집중식 온라인 포털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중앙 정부는 효과적인 규칙 이행에 대한 규칙 및 실행지침에 따라 생산자, 재활용업자 및 재가공업자의 반납 제출 기한을 이 규칙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완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규칙 15) 시행위원회

하위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위원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고 중앙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관련 법령 및 표준

관련 법령

- 인도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정, 2022

* 기계 번역을 사용한 참고용 문서입니다.

10. 상기 규칙 별표 -I에서, —

(a) 1항의 (ii)조항은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즉:—

"(ii) 최대 중량 0.002%(20 ppm)의 카드뮴이 함유된 휴대용 건전지만 배치해야 한다."

(b) 2항에서 (i)항 뒤에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 즉: —

"(ia) 생산자는 2025년 3월 31일 또는 이전에 생산된 모든 건전지 또는 전지 팩에 규칙 4에 따라 발급된 생산자 책임 확대 등록 번호가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11. 상기 규칙 별표 II에서, —

(a) (v)조항에서 "또한"을 "할당된 목표에 따라"로 대체한다.

(b) (x)조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즉:—

"(x) 1989년 중앙 자동차 규칙에 따라 정의된 전기 인력거, 카테고리 L5, L5-M, L5-N, E-카트를 포함한 삼륜차 전기 자동차 건전지의 경우 필수 폐전지 수거, 재활용 또는 리퍼비싱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No.	이행 주기	연도	의무적 폐전지 수거 목표와 수거 리퍼비싱 또는 재활용 100% 목표 (중량)	7년 주기마다 의무적 폐전지 수거 목표와 수거 리퍼비싱 또는 재활용 100% 목표 (중량)
(1)	(2)	(3)	(4)	(5)
(i)	2032-33 ~ 2026-27	2026-2027	2021-22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7년 이행 주기 동안 시판된 건전지에 대해 7년 이행 주기 종료(7년차 종료)까지 100% 폐전지 수거 및 100% 리퍼비싱 또는 재활용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7년 주기 동안 연간 시판된 평균 건전지 수량의 최대 60%가 다음 이행 주기로 이월될 수 있다.
(ii)		2027-2028	2022-23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iii)		2028-2029	2023-24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iv)		2029-2030	2024-25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v)		2030-2031	2025-26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vi)		2031-2032	2026-27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vii)		2032-2033	2027-28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viii)	2033-34 ~ 2039-40 이후	2033-2034	지난 5차 회계연도(예: 2028-29년) 이후 시판된 건전지 수량의	

			최소 70%.	종료(7년차 종료)까지 100% 폐전지 수거 및 100% 리퍼비싱 또는 재활용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7년 주기 동안 연간 시판된 평균 건전지 수량의 최대 60%가 다음 이행 주기로 이월될 수 있다.
--	--	--	---------	---

(c) 조항 (xii), Sl.No. (xi)에 대한 표, 항목 열 (4)에서 수치 "80%"는 수치 "70%"로 대체한다.

12. 상기 규칙의 서식 1(A)에서 제목에 "또는 경산"을 생략한다.

13. 상기 규칙의 서식 1(B)는 다음의 서식으로 대체한다. 즉:—

"서식 1(B)

(규칙 4, 11 참조)

생산자 등록 절차 허가 서식

Ref: 등록 신청 번호

일자

등록 No.:

이에 따라----- (씨)는 2022년 폐전지 관리 규칙 조항에 따라 폐전지 생산자로서 1회 등록을 허가받았다. 2022년 폐전지 관리 규칙 조항을 위반할 경우 1986년 환경(보호)법(1986년 29일)에 따라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회원 총무)

중앙오염관리위원회"

14. 상기 규칙의 서식 1(C)에서,

(i) 제목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계획"은 "시판된 건전지와 관련한 반납"으로 대체한다.

(ii) Sl. No. 6에 대해 표에서, —

A. (2)열의 항목은 다음 항목으로 대체한다. —

"건전지 건조 중량뿐만 아니라 자체 사용 건전지를 포함하여 시판된 건전지 타입, 브랜드 이름, 건전지 총 개수 및 중량"

B. 열 (3)에서 "전체" 다음에 "개수 및"으로 대체한다.

15. 상기 규칙의 서식 3은 다음의 서식으로 대체한다. —

"서식 3

(규칙 4 참조)

[생산자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반납]

1.	생산자 이름						
2.	생산자 등록 주소, 웹사이트 주소 및 자세한 연락처						
3.	허가된 자의 이름과 이메일이 포함된 상세 주소, 유선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4.	생산자 책임 확대 목표가 계산된 해당 연도의 시판된 건전지 세부 정보	Sl.No.	회계 연도	건전지 타입	판매된 건전지 수량		
					수량	총 중량	건전지 재료의 건조 중량
		1.					
		2.					
		3.					
4.							
5.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 및 반납으로 제출된 건전지 수거, 리퍼비싱 또는 재활용에 대한 세부 정보	1.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 2. 리퍼브 또는 재생 건전지 재료의 중량 3. 회수된 건전지 재료의 중량 4. 폐기 처리 세부정보					
6.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세부정보	재활용업자 또는 리퍼비싱업자별 인증서 번호(No.)					
7.	사용 전 폐전지 세부 정보 및 폐기 처리 방법(최종 폐기 포함 재활용/기타 폐기 처리 방법)						

참고: EPR 목표 준수에는 건전지 자체 사용이 포함된다.

허가받은 자의 서명:

장소:

날짜:

[F. No. 12/36/2019-HSMD]

NARESH PAL GANGWAR, Addl. Secy.